

민족적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계기들*

홍태영 | 국방대학교

| 국문요약 |

신자유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유럽의 극우세력의 확장과 같은 극우민족주의의 득세라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신자유주의를 통한 노동력 이동의 증대라는 현상과 그것을 일정하게 제어하고 통제해야 할 국가의 장치로서 극우민족주의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유럽 극우민족주의적 흐름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거부와 국민국가의 강화, 문화적 정체성 강화,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 등을 보이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화하고 구별짓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극우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를 통해 성취되어온 민주주의의 성과를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주주의의 과제는 국민국가적 틀을 통해 형성되어온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계기들을 찾는 것이다.

주제어 | 신자유주의, 극우민족주의, 이주노동자, 차별화, 새로운 공동체, 민족적 민주주의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3970)

I. 들어가는 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라는 통치형태가 존재했던 이후로 오랫동안 서구 역사에서 사라졌던 민주주의라는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은 1789년 프랑스혁명과 함께였다. 민주주의라는 말의 등장은 당시 혁명의 봉기와 함께 서서히 전면에서 등장하는 민중들 그리고 상퀼로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층 민중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는 움직임과 함께였으며, 그것은 정확히 고대 아테네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프랑스혁명 당시 구체제의 귀족층이건 새로이 등장하는 자유주의적 엘리트이건 그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1791년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제헌의원들이 제한선거권을 통해 하층민중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려 했던 것은 적어도 ‘이성’적이지 못한 군중들에 의한 민주주의를 제한하려는 의도였다. 이성을 중시하던 그리고 이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던 자유주의적 엘리트들에게 결코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민중 즉 ‘수’로 표상되었던 민주주의적 세력에 대한 제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와 더불어 근대에서 그리스적 민주주의 즉 콩스탕의 표현에 따르면, ‘인민에 의한 주권의 직접적 행사’ 혹은 프랑스혁명 시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처에 인민들의 실천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것은 근대의 분업화된 상업사회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근대인들은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고, 정치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근대의 상업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찾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반민주주의적인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거의 한 세기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19세기의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토크빌(A. de Tocqueville)과 영국의 밀(J. S. Mill)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분명하였다. 토크빌이 민주주의를 수용하였던 것은 그것이 바람직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즉 거의 수백 년이래 ‘조건들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경향은 지속적으로 그 힘을 키워 왔던 것이고, 그렇기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일탈 - 루이 나폴레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전

제정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일탈 -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기초 (F. Guizot)만큼이나 반민주주의적 자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밀 역시 ‘복수투표제’를 제안할 만큼 엘리트적 자유주의자로서 민주주의에 대해 경계하였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신뢰하였던 정치기제는 바로 ‘대의제’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요구를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이성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장치였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다시 등장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이제 19세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근대적 민주주의를 구성해야 했고, 그 틀은 당연히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였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그러한 국민국가의 형성에 중심에 있었다. 근대의 정치공동체로 등장한 국민국가는 그 주권자로서 ‘국민’이라는 실체 혹은 추상화된 실체, 그리고 국가(State)라는 물리적 권력과 제도를 가진 실체의 결합으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주권의 배타적 행사를 이루어지는 영토라는 지리적 경계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국가건설(State-building)의 과정과 18세기에 서서히 등장하였고 프랑스혁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민과 그 형성과정(nation-building)을 결합시키는 매개였다. 그 결합의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국민을 형성시켰고, 또한 국가장치와 그 기능을 민주주의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국가라는 틀 속에서 진행된 민주주의는 그리스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민족적 민주주의 형식과 내용으로 드러난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동안에 발전되어 왔던 민족적 민주주의는 20세기 말에 이르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우선은 국민국가라는 틀 즉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의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실현되었던 민주주의, 즉 민족적 민주주의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민족적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의 계기들을 살펴보면서 그 위기의 형태를 가늠하고 그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전환을 위한 계기들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적 민주주의 형성과 발전

그렇다면 민족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선은 ‘민족적’이라는 수식어가 말하는 바는 근대 국민국가라는 틀이라는 점 그리고 ‘민족’ 혹은 ‘국민’이라고 지칭되는 민주주의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프랑스혁명과 함께 ‘국민’은 군주를 대신하는 새로운 주권자로 등장하였고, 홉스 이래 사회계약론의 정치철학자들이 제시한 자연권을 지닌 합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국민은 영토적 경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권의 담지자로서 내부적 동일성(identity)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프랑스는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기억과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19세기 프랑스 역사가 미슐레는 자신의 다양한 저작을 통해 프랑스인의 공동의 기억만들기 작업을 수행하였다. 미슐레가 ‘인민’을 역사의 주체로서 설정하고자 했던 것은, 19세기 말 르낭이 말했던 것처럼, 민족을 이루는 한 축으로서 ‘공통의 역사적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말하고 있다(J. Michelet 1974; E. Renan 1993). 또한 다른 한 축으로서 프랑스라는 정치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적(civic) 민족의 구성이다. 프랑스 시민권의 발전이 1789년 혁명과 함께 성립된 민권(civil right)과 당시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1848년 혁명과 함께 성인남성 모두에게 부여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그리고 19세기말부터 성립되기 시작한 사회적 권리(social right) 순으로 이루어졌다면, 무엇보다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국민성원권(nationalité)이었다. 잘 알려졌듯이,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국민성원권을 전제한 시민권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었다. 시민권의 발달은 결국 시민을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권리의 확장이기도 하다. 결국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체의 형성과정은 문화적 혹은 종족적(ethnic) 민족/국민의 구성 - 종족이 가족의 확장이라는 하나의 허구(fiction)를 통한 구성 - 과정이라는 하나의 축과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인 국민의 구성과정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단일한 국민의 구성과정은 동시에 단일하지 않는 국민 내부의

문제, 특히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계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특히 추상적인 국민의 구성에 대비되는 구체적인 국민/인민에 대한 인식과 그들에 대한 집합적 표상의 과정을 요구하게 된다. 19세기는 민주주의의 구체화과정이며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자본주의의 발달의 시기였다. 자본주의 발달에 있어서 그 출발점을 이루는 것 중의 하나는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 즉 중세의 신분적 굴레로부터 자유로우며 동시에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즉 생산수단을 결여한 노동자의 탄생이다. 프랑스혁명 초기 1791년 르 샤플리에(Le Chapelier) 법은 동업조합과 상인조합의 폐지를 통해 자유로운 노동자를 사회 속에 던져주었으며, 빈민들에게 자선을 베풀 경우 굴욕감을 안겨주는 엄격한 빈민 구호법을 제정하였다(R. Castel 1994). 칼 폴라니가 1834년이 되어야 비로소 영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은 스핀햄랜드법의 폐지를 염두에 두고서이다(K. Polanyi 1991). 즉 교구나 영주에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자유로운 계약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트가 탄생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맑스는 자본과 노동력의 존재, 즉 자본관계의 존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행되면서 “교육, 전통, 관습에 의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요구를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는 노동계급이 발전”할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의 자연법칙 즉 노동자 자신이 자본에 정상적으로 종속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바로 원시적 축적의 본질적 측면임을 강조한다(K. Marx 1989, 927). 원시적 축적의 과정이 단지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적 과정이 교육, 전통, 관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권력의 역할이다. 결국 국민국가라는 정치체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의 체계가 작동하는 방식이 성립된다. 정치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 즉 민족주의 - 공화주의적 연대 혹은 사회적 연대 등으로 이름으로 작동하는 통합의 이데올로기 - 를 통한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은 중층적으로 결합된다. 적어도 19세기에 민족주의는 이러한 국민국가의 작동의 중심에 있다.¹⁾ 자본관계의 재생산의 한 축인 노동자

1) 문헌상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프랑스 혁명전쟁과 함께였다(J. Godechot

의 재생산을 위한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무엇보다도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정신(spirit of capitalism)’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L. Greenfield 2001). 19세기 전반기 독일의 통일과 국민경제 형성을 요구했던 리스트의 주장은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F. List 1998).

19세기 동안 자본주의의 발달은 국민의 동일화 과정의 굴곡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사회적인 것’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회적인 것’을 위한 해결의 과정은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의 표상으로서 국가의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국민으로의 포섭과정이기도 하다. 산업재해, 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차원에서 대응과 보호 그리고 연금에 대한 대책이 1차 대전 이후 전쟁미망인과 고아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애국주의적 및 민족주의적 틀을 통한 문제의 해결, 즉 사회적 국민국가(social nation-state)의 확립이었다. 뒤르카임의 연대 개념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공화주의적 연대로 집중되는 이 해결책은 노동자계급을 철저히 국민의 일원으로 호명하는 과정이었다. 사회적 권리의 부여는 노동자계급의 시민화과정이며, 애국주의적 시민으로의 호명이기도 하였다. 흡스봄의 표현에 따르면 국민적 정체성이 계급적 정체성을 압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콜리(L. Colley, 1986)를 따라 국민적 정체성과 노동자 정체성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국민의 형성 그리고 그러한 추상적 - 정치(철학)적 - 국민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 혹은 사회(학)적 - 인민의 표상(representation) 과정

1971). 프랑스가 절대왕정에서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근대적 국가를 확립하고 그러한 와중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은 유럽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어 놓은 것이다. 물론 이미 영국의 경우 민족적 정체성을 통한 국민 형성의 과정과 국가 형성의 과정이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18세기 중반부터 진행되었다.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민 형성의 과정이 촉발된 것은 프랑스혁명이다. 프랑스혁명 전쟁과 뒤이은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은 국가의 경계에 대한 확정을 넘어서 그 영토적 경계 내에 살아가는 인민들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 시차를 두고서 유럽의 나라들은 민족주의적 동원은 통한 국민국가 건설과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경쟁적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이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19세기말 서서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심적 기제로서 등장한 정당은 그러한 민주주의의 과정과 내용의 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세기말 20세기 초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보통선거권 혹은 그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선거권에 기반한 대중민주주의 시대로의 진입과 더불어 그러한 대중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이자 대중들의 욕구 분출의 통로로 등장한 것이 정당이었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을 결집시키는 장치이자 동시에 의회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기 시작한 정당들은 대중들의 의사와 욕구를 분출시키고 전달하는 장치였으며 동시에 여론의 형성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20세기 초반 극단적인 좌우 세력을 제외한다면, 공화국 및 공화주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프랑스의 정당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심적 장치였다. 하지만 동시에 정당들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주권의 문제를 실종시켰다. 국민이라는 단일한 실체에 대한 불확실성, 칼 슈미트가 비판하였듯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주권적 실체가 실종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20세기 초반 프랑스의 자유주의적 공화국에서 그것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식이었다. 분명한 것은 이 시기 민주주의는 ‘민족적 민주주의’였으며, 프랑스의 보편주의적 공화주의는 민족주의의 또 다른 이름, 즉 ‘민족적’ 공화주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정체성 형성과 경쟁적이었던 국민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을 통해 국제주의적 혁명의 길을 선택했던 러시아와는 다른 길을 모색한 유럽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의 길- 즉 애국적/민족(주의)적 사회주의의 길 - 이기도 하였다.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틀을 통해 발전되는 유럽적 근대는 세 가지 축, 정치적인 것의 구현의 틀로서 민족적 민주주의, 경제적인 것으로서 자본주의와 국민경제, 사회적인 것의 해결방식으로서 사회적 국민국가 혹은 복지국가 등의 특성을 갖는다(A. Dirik 2005; Ch. Taylor 2010; 가라타니 고진 2009). 이러한 것들의 중심에 국민국가가 있고, 그것을 구성하는 민주적 시민들의 집합체로서 정체성을 지닌 국민이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민족주의는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이데올로기이자 장치로서 존재해 왔다. 장치라는 의미는 국민을 구성하는 시민들의 권리의 문제와 관련된다. 결국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국가 형성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III.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민족적 민주주의 위기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가져온 가장 뚜렷한 효과는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개혁은 단지 복지혜택의 축소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를 통해 해결되어 오던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국민국가를 속에서 이루어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이자 전환의 요구였다.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와는 불편해 보이는 동거를 하고 있는 극우민족주의의 득세가 보여주듯이, 근대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국민, 대의제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의 중심에 있던 국가권력의 위상 등에 대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국민국가의 후퇴

1970년대 초반 브레튼우드 체제의 붕괴 이후 서서히 나타난 복지국가의 위기는 ‘사회적 국민국가’의 위기, 즉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 형성된 민족적 민주주의 및 국민경제의 위기이다. 따라서 그것들을 결합시켜 왔던 민족주의의 새로운 위상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위기의 시작은 이미 1968년의 혁명, 유럽적 근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맞물려 있다.²⁾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적 차원에서 1970년대 초반의 오일쇼크, 브레튼우드 체제의 붕괴 등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복지국가의 위기로 이어졌다. 완전고용이 목표이자 전제였던 사회적 국민국가는 실업과 고령화 사회의 출현으로 결국 장기적인 위기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그것은 1970년대 말부터 서서히 신자

2) 푸코가 언급했듯이 그 스스로 1968년의 혁명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자신 역시 그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이다. 근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는 차원, 즉 근대적 이성과 합리적인 개인에서 출발한 정치체 및 국민경제, 그것들의 구체적인 실현체인 국민국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처럼 유럽적 근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그것을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도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 문제는 이 글의 IV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유주의의 출현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분명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형태이다. 더 이상 국민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19세기 자본주의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국가는 자본의 축적, 노동력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담당하는 주체이자 틀로서 존재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 자본은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스스로 넘나들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자본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의 경계에 대해 스스로를 얽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국가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복지국가 위기와 케인즈주의의 실패 그리고 서서히 시작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과 세계화는 19세기 말에 완성된 사회적 국민국가의 위기가자 해체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었다.

브레튼우드 체제가 금융의 국제적 이동을 억압함으로써 국민국가에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제공했다면, 그 체제의 붕괴이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과 같은 세계적 관리기구들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 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적 경제발전의 제도적 조건을 해체시켰다. 물론 거시경제관리라는 국가의 역할은 사라지지 않지만, 뚜렷한 변화가 발생한다. 케인즈주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이 산업적 성장과 고용을 목표로 하는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면, 이제 정책의 중심은 화폐정책으로 이동한다(박상현 2012, 285-286). 정부의 역할은 기업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금융시장의 작동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러기 위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화폐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증권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것이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산업예비군의 존재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높은 실업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였다(박상현 2012, 297). 케인즈주의를 통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국민경제의 틀은 이제 신자유주의 혹은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조절과 산업예비군 즉 비정규직의 양산을 통한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맞추어 사회정책 역시 신자유주의적 변환을 겪게 된다. 케인즈주의 시대 사회정책이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다면, 신자유주의

시대 사회정책은 금융적 팽창과 노동시장의 신축성이라는 목표를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박상현 2012, 298-299).³⁾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사회적인 것’의 조절 즉 국가와 사회적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인 것’의 존재에 대한 부정 다시 개인적인 것의 절대화가 이루어지고 사회문제는 개별화된다.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연대를 통한 해결은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인정이며,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사회적 국민국가 즉 복지국가의 형성이었다.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결의 방식을 다시 개인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성이 아닌 개인의 책임성에 대한 강조를 통한 복지국가의 개혁이다. 노동력의 탈상품화지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개인들을 노동시장에 빠르게 편입/재편입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른바 일하는 복지(workfare)가 그것이다.⁴⁾

신자유주의의 강세는 곧 사회적 국민국가의 후퇴를 의미한다. 이러한 후퇴는 그 동안 국민국가라는 공동체 형태를 통해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통합과 연대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이기도 하다. 사회적 국민국가를 통해 해결되어 왔던 ‘사회적인 것’의 문제가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해결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회적 국민국가의 해체를 통한 시민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권의 위기는 곧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해체 혹은 그 정체성의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 노동자들

3) 이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복지국가 수준을 달성한 유럽과 그렇지 못한 미국은 분명 차별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보험의 원리’에 기초했던 연금제도에는 ‘투자의 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구호의 원리’에 기초하였던 빈곤감축 프로그램은 신축적인 노동시장에서 빈민의 ‘고용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다(박상현 2012, 299). 유럽의 경우 복지국가의 개혁을 통해 ‘생산적 복지’ 내지는 ‘제3의길’ 등을 통해 기존의 방어적 복지와는 다른 형태의 복지, 즉 일하게 하는 복지, 즉 노동시장에 가능한 한 빨리 재투입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복지로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김수행 외 2008).

4) 자기계발에 대한 강조, 스펙과 열정에 대한 강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단면이다(서동진 2009). 68년 5월 혁명에서 등장했던 삶, 환경, 욕망, 새로운 에너지와 사상 등은 ‘저항했던 그 체제에 의해 세심하게 이윤으로 전환’되었다(L. Boltanski et E. Chiapello 1999, 150). 1980년대 등장한 새로운 경영방식의 많은 것들은 이미 68혁명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의 파업은 계급투쟁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개별화된 집단이기주의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전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자운동의 쇠퇴, 비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프레카리아트의 등장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⁵⁾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을 통한 산업예비군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분할지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신자유주의보다는 느린 방식이지만 유럽연합 역시 장기적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지속하였고, 과거 국민국가 시기의 민주주의적 성과는 유럽 통합의 진행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국민국가라는 방어막이 사라지지만 그것을 대신할 유럽연합이라는 틀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유럽적 근대의 위기와 해체, 재구성 혹은 재구조화 속에서 주권권력의 새로운 존재방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무엇보다도 유럽적 근대의 중심향이었던 국민국가가 후퇴하면서 민족주의는 새롭게 구성된다. ‘국민적/민족적’이라는 말을 통해 구성되었던 근대성의 산물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국민경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그 틀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민족적 민주주의 역시 위기이다.

2.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⁶⁾

최근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전선은 과거의 인종주의적 구호, 파시즘적 경향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등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반유럽연합(EU) 및 프랑스 국가

5) 노동자계급 혹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적인 것의 문제해결의 중심에 있었던 사회는 복지국가 시기의 안정적 사회이며, 또한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협약이 가능했던 사회였다. 하지만 프레카리아트 사회란 그 시기를 넘어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노동유연성 즉 고용과 소득, 노동시장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같은 대표조직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는 프레카리아트가 급속히 증가하는 사회이다(G. Standing 2014; 이진경 2011).

6) 이 절의 내용은 줄고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다문화사회연구』 10(1), 2017에서 자세히 다루었고, 따라서 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으며 일정한 효과를 얻고 있다. 극우파의 소위 ‘탈악마화 전략’은 과거 장-마리 르펜(Jean-Mari Le Pen)의 구시대적 이미지를 벗어나 딸 마린 르펜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변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오창룡 외 2016). 특히 마린 르펜은 프랑스 공화주의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라이시테⁷⁾ 이념을 극우적 방식으로 전유하면서 반이민자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프랑스의 현 상황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공화파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프랑수아 피용(F. Fillon)의 경우도 분명히 자신의 반이슬람주의를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프랑스의 정치 지형이 우경화되어 있다. 1980-90년대만 하더라도 관용을 내세우면서 무슬림에 대한 포용정책을 내세웠지만, 2000년대 들어서 프랑스 공화주의는 좌우를 막론하고 강경한 원칙이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시의 복장에 대한 금지가 입법화 되었고, 이후 모스크 건설, 무슬림의 거리기도집회 등을 비난하고, 할랄 급식이 공교육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반이슬람주의의 확산은 70년대부터 시작된 복지국가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빈곤층을 이루면서 복지예산의 소비층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면서 반이민정서는 더욱 증폭되어 왔다.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위치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고용불안정성은 국민전선의 반이민 구호에 호응하도록 만들고 있다. 거기에 복지국가의 위기와 유럽연합의 진행 속에서 부각된 국가주권에 대한 위협은 반유럽 정서의 부각과 ‘프랑스인’ 중심의 복지라는 국가주의적 혹은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도록 하였다. 배타적 국민 개념과 국가주권에 대한 강조 속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 특히 중도세력의 우경화 - 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7) 라이시테(lâicit ) 이념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되어 제3공화국에서 정착된 프랑스 공화주의의 핵심이념이다. 라이시테는 단순히 세속화라는 번역어로 포섭되지 않는 프랑스 정치문화를 반영한 개념으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넘어서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제시되었다. 이 이념은 프랑스 혁명 이후 반혁명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프랑스혁명의 원칙을 부정하고 정치, 교육 등 공적 영역에 개입하려는 가톨릭에 대항하여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확립된 이념이다(홍태영 2011).

만들어내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민족주의의 득세는 신자유주의의 강화, 유럽통합의 가속 그리고 개별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전후 활황 속에서 유입된 외국인노동자들의 2-3세대의 등장과 정체성의 위기, 실업율의 증가,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재정악화, 유럽통합에 따른 국민국가의 위상 약화 등의 배경 속에서이다. 특히 중동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슬람교도들 - 최근의 시리아난민들까지 - 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된다. 국민국가의 약화에 따른 위기감 속에서 등장한 극우민족주의이지만 이들의 민족주의는 20세기 전반기에 보여졌던 극우민족주의와는 서서히 구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980년대 극우민족주의가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유사하게 20세기 전반기의 극우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면, 서서히 극우민족주의는 문화적 양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화적 인종주의’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적 인종주의는 특정한 방식의 경계짓기 형태이다. 문화적 지표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지고 혹은 인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생물학적 지표보다는 문화적 지표를 통한 ‘구별짓기(distinction)’이다. 생물학적 인종주의라는 거부감을 벗어나기 위해 문화적 요소에 대한 강조를 통해, 결국은 특정한 문화를 인종주의화하는 방식을 통해 특정한 성향의 집단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명화된 프랑수아즈적 혹은 유럽적 가치에 대항하여 북아프리카인들의 가치는 ‘더럽고, 비위생적이고 범죄적인 것’들과 연관지어 설명된다. 인종주의 언어가 계급화되고, 젠더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전선(Front National)에 의해 만들어지는 북아프리카 아랍남성의 이미지는 남자다움, 북아프리카 여성의 경우 다산의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비문명화된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도록 형성되고 있다. 식민주의의 언어로 만들어진 상상의 타자이다. 또한 국민전선이 동원하는 인종주의적 언어는 계급의 언어와 연관되어 북아프리카이민자들은 새로운 빈곤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M. Evans 1996, 49-54). 또한 이슬람교도들과 테러리즘 집단의 동일시, 그 반작용으로 서구문명과 이슬람문명의 적대적 경향에 대한 강조 등이 유추된다. 문화적 인종주의는 이러한 이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극우민족주의의 이러한 세력화와 강세는 앞서 말한 1980년대 이후 변화된 경제상황 및 자본주의적 발전 양식의 변화와 연관된다. 신자유주의의 강화에 따른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의 증가가 뚜렷해졌다. 자본주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세계자본주의가 ‘저임금노동력’의 재생산 혹은 확보를 통해 작동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세계적 수준에서 노동력의 이동은 불가피하며 자본주의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이동은 제한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를 보장받는 세계적 수준의 공동체가 아니라 경계를 통한 구별짓기와 차별을 동반한 적절한 조절이 동시에 진행된다.

난민법을 통해 국민국가의 경계를 강화하는 듯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요건 혹은 상황, 혹은 특정한 사람들을 겨냥한 경계의 강화이지 경향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강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도 역시 일정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저임금 하층 노동력 역시 일정한 수입이 필요하며, 그에 맞추어 차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최진우 2015, 215-216). 이것들을 조절하는 수준에서 자국으로의 외국인의 유입을 조절하고 동시에 그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외국인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극우 민족주의는 적절한 명분이 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완전고용을 목표로 했던 케인지안적 사회적 국민국가는 후퇴하고, 이민 노동자들의 유입을 통한 잉여노동력의 공급, 즉 산업예비군의 지속적 확보를 통한 노동의 유연성 확대, 동시에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배제의 정치전략, 즉 극우민족주의를 통한 국민/비국민 혹은 시민/비시민의 구분 전략이 등장한다. 마치 이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사용된 두 개의 국민 전략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작동하는 ‘인종과 계급의 변증법’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유색인종 노동계급이다(D. McNally 2011, 208). 금융의 세계화 속에서 ‘삶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조건들의 금융화, 민영화’를 통한 일상의 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유색인종 노동자들, 결국은 ‘신용자격이 가장 없는 이들’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다(안정옥 2013a; D. McNally 2011).⁸⁾

8) 안정옥(2013a)은 서브프라임모기지 확대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이 주로 사는 도시지역 공동체의 주거조건을 개선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갈등적

극우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철저히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된 그들은 통합불가능한 자들이며,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의 경쟁의 전면화가 산출하는, 경쟁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이며, 나아가 전 지구화된 세계에 ‘잉여’로서 존재하는 이민노동자나 위협한 외국인”이다(사토 요시유키 2014, 114). 극우민족주의는 이러한 배제와 포섭의 메카니즘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포퓰리즘적 이데올로기이다. 외국인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며 위험한 사람, 위험한 계급인 것이다. 극우민족주의에서 주권권력의 강화를 요구한다는 점은 마치 예외상태의 상시화를 통한 권력의 권능의 강화이지만, 그것은 지속적으로 호모사케르의 발명을 통하는 방식이다.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호모사케르는 주권권력이 법적, 정치적 질서 속에 포섭하면서 동시에 배제시키는 존재로서 설정된다(G. Agamben 2008). 위험한 계급으로 간주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주권권력이 행하는 ‘안전의 정치’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예외상태/비상상황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계급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은 주권적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고 나아가 개인의 삶을 관리하는 ‘생명관리권력(bio-pouvoir)’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였다(M. Foucault 2004). 그러한 국가권력은 현대의 테러리즘의 시대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치를 위해 새로운 위협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계급을 넘어서 계급의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한 계급, 즉 ‘최하층’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그들은 ‘사회의 적’으로 간주되기까지 한다(Z. Bauman 2010, 133-152). 신자유주의 시대 위험한 계급은 바로 이주노동자인 것이다. 그리고 극우민족주의는 그들을 계속 구별해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극우민족주의적 흐름들은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 유럽연합의 강화에 대한 거부와 국민국가 틀의 강화, 동시에 문화적 정체성 강화, 기존에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극우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해 새로운 상징, 가치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차대전 이후 대중화된 미국식 삶에 편입되고자 하는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본다. 물론 미국의 구체적인 예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것’의 구성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유럽의 이민노동자들의 역시 이러한 문제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것이고, 민족에 대한 새로운 호명이다. 하지만 현재 민족의 구성, 혹은 네이션의 구성과정에서 극우민족주의자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종교, 문화,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방식으로 민족적 특성을 구성해 내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negative) 방식을 통한 민족의 재구성이다. 즉 이러저러한 것은 민족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다. 이러한 민족의 구성은 현재적 맥락 속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민족의 재구성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망령일 뿐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민족’으로부터 배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면서 기존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방향의 통합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민족적’ 공화주의에 대한 강조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슬람에 대한 경계, 히잡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보이듯이 특정 종교와 문화에 대한 경계는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에서도 공화주의라는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국민국가의 강화로 볼 수 없다. 사회적인 것과 관련하여 국가는 자신의 역할을 버리기 시작하였고, 공화주의의 강화 역시 경계의 강화이지 내부적 연대의 강화는 아니다. 반면에 그 과정에서 국가는 민족주의적 경계, 즉 배제의 논리로서 민족에 대한 경계만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민족에 의해 민족주의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의해 민족이 구성되듯이, 21세기에 민족주의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민족을 호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민족주의에 의해 호명되는 민족은 19세기 동안 사회적인 것의 해결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민주주의적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대와 통합을 통해 형성된 민족/국민이 아니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증가하는 이주민을 포섭하고 배제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뿐이다. 결국 현재의 극우민족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구호는 국민국가의 동원과 통합 이데올로기가 아닌 경계 내에 진입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배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차별 및 구별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강화가 민족적 민주주의 즉 국민국가 시기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려와 그것의 복원 나아가 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민족의 재구성 혹은 호명을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의 민족주의의 출현방식은 반드시 민족주의가 국민국가와 반드시 결합하지는 않고 있으며 국민국가와 민족

주의 사이의 탈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⁹⁾ 현재의 극우 민족주의는 자신의 방식대로 민족의 경계를 짓기 위한 상징과 가치의 조작을 통해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민족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IV. 민족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근대적 삶의 형태를 구성하였던 구조적 요소들의 균열, 즉 정치적으로 국민국가와 민족적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적으로 국민경제의 틀을 벗어난 세계자본주의 전환, 사회적으로 사회적 국민국가라는 요소들의 한계 혹은 그것들의 쇠퇴가 분명하다. 결국 근대성을 이루는 정치, 경제, 사회의 요소들의 전환과 새로운 절합(articulation)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한 새로운 계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전환과 제(諸) 요소들의 절합은 근대성의 역사적 성과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확장이라는 기준을 가질 수 있다.¹⁰⁾ 포스트모던 시대에 근대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하기 위해 혹은 새로운 공동체의 계기를 구성하려 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지점들이 존재하며, 이 글에서는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지점에 대해 언급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것’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의 강화에 따라 사회적 국민

9) 그렇다면 국민국가와 탈구된 민족주의가 ‘고유한 의미에서 민족주의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분명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결합이라는 현상은 19세기에 발생하여 20세기 전반기에 정점에 이르는 특수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아랍에서 민족주의는 종교적 분파와 결합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띤다. 시아파 민족주의, 수니파 민족주의가 그것들이다. 아프리카에서 민족주의는 종족에 기반한 민족주의이며, 유고연방이 해체된 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민족주의 역시 종교, 언어, 문자 등과 결합하는 방식의 민족주의이다.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탈구이다.

10) 근대의 기본적인 토대였던 진보에 대한 역사철학적 전망과 과제가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다하더라도, 민주주의 및 그것의 확장에 대한 규범적, 윤리적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은 존재한다.

국가가 후퇴했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것’에 대해 19세기말에 제시되었던 해결책, 즉 케인즈주의와 사회입법을 통한 시민권의 확장 등에 기반한 복지국가적 해결의 붕괴를 의미하지만, 그것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출구를 필요로 한다.¹¹⁾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주의, 민족주의의 국민국가와의 탈구와도 연관된다. 유럽의 예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는 세계 곳곳에서도 보이듯이 인민의 위계적 분할, 국민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주노동자의 흐름, 그에 따라 국민/민족 단위를 초과하거나 혹은 이하의 하위 공동체의 형성과 그 가능성들을 포착할 필요성이 있다. 즉 결국 ‘사회적인 것’의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 국민국가적 수준에 한정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미 신자유주의에 의해 새롭게 전환된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19세기적인 해결방식 즉 케인즈주의 혹은 사회적 국민국가를 통한 사회적인 것의 해결방식은 불가능하다. 또한 플라니에 의해 제시되었던 사회적 경제의 부활 역시 의미없는 작업이다. 플라니는 19세기 사회사를 통해 형성된 이중운동, 즉 자기조절적 시장 - 상업계급의 지지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방임과 자유무역을 수단으로 이용 - 과 사회의 자기보호 원리 - 생산조직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보존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지주계급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호입법 등의 사회적 입법을 수단으로 사용 - 의 이중적 작용으로 이해하려 하였다(K. Polanyi 1991, 168). 19세기 말의 사회적, 국가적 보호주의는 자기조절적 시장의 내재적 위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회의 자기보호운동의 형태를 취하는 집단주의, 즉 공중보건, 공장법,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등에 관한 사회입법은 ‘반자유주의 입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K. Polanyi 1991, 180, 188). 19세기 동안 사회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찾는 작업은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가 맑스에 의한 정치경제학 비판과 그에 기반한 사회주의의 추구였고, 다른 하나는 뒤르카임의 사회학을 통한 정치경

11) 서동진은 “케인즈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법인자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축적체제가 존재하고 두 차례의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유동성이 미국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축적체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케인즈주의와 같은 개혁 전망이나 플라니가 제시하는 사회경제 통념에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서동진 2012, 116).

제학 비판과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국민국가의 구성이었다. 이 두 개의 시도 모두가 20세기말 그 유효성을 상실하였다. 단지 신자유주의의 강세때문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변화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강세를 보이는 신자유주의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은 고유한 축적체제를 찾지 못하는 부유상태이다. 그러한 여파 속에서 유럽통합은 그에 대응하는 하나의 시도이며, 정치사회적으로 국민국가 시기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상대화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대량실업, 1980년대 반노조주의 및 노조의 급속한 약화, 구조조정의 상시화, 중산층까지 확대된 신빈곤의 등장과 불안전 노동의 확산은 사회적 배제를 내적으로 구조화하였다(안정옥 2013, 196).¹²⁾ 삶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 - 주택, 연금 등 - 의 금융화, 민영화추세가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근대의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결책을 무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민주주의의 과제는 그러한 ‘사회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즉 ‘사회적인 것’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과제가 요구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해결방식은 기존 민족적 민주주의에서 성취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존하고 나아가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속에서 찾아야 한다. 현재의 민족적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계기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두 번째 문제로의 이동한다. ‘사회적인 것’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에 대한 사유를 요구한다. 근대의 정치적 주체로서 등장하였던 시민 - 이성을 갖춘 시민 - 과 노동자계급, 즉 프롤레타리아 트라는 보편적 계급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적어도 한계를 지닌 개념이다. 19세기 자본주의 발전 속에서 노동자계급은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과 노동자 정당이라는 조직을 통해 결집되는 단일한 주체 - 맑스주의에 의해서는 역사적

12) 신자유주의 이후 사회적인 것의 해체 과정은 곧 사회문제의 개인화 과정이다. 즉 사회적 위험의 개인화이며, 삶의 조건들의 개인화이다. 노동조합마저도 계급투쟁의 장치라기보다는 집단적 이기주의, 개인적 이익의 총합적 표현으로 간주된다.

인 보편적 주체로서 국가의 입장에서는 대화와 협상의 단일한 상대자로서 - 로서 설정되었고, 그러한 결과물 중의 하나가 사회적 국민국가였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위기 그리고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통화정책은 완전고용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산업예비군, 최근의 비정규직 양산을 통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의 해체와 그에 따른 노동운동의 쇠퇴,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다양한 프레카리아트의 등장이고 특징적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프레카리아트의 등장이 ‘사회적인 것’의 새로운 구성을 가져온다. 기존의 노동조합을 통해서 대표될 수 없는 다양한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 특히 불법적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장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성원권의 부재에 따라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등 다양한 잠재적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인가? 프레카리아트라는 예에서 보이듯이 전통적인 행위주체와는 다른 방식의 다양한 주체들의 가능성/잠재성이 존재한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주노동자들 -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 은 기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다문화주의의 주요한 담론 중의 하나였던 ‘관용’은 많은 이들에 의해 그 한계가 지적되었다. 관용 담론이 가지고 있는 유럽중심주의적, 자문화중심주의적 전제에 대한 비판 - 웬디 브라운(2010) - 혹은 그것이 전제하는 가부장적 전제 - 하버마스 - 등이라는 비판은 그 개념이 갖는 뚜렷한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제시되는 주요한 개념이 ‘환대’이다. 칸트에서 시작된 ‘환대’ 개념은 이미 헬레니즘 시대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나는 세계시민이다’라고 응답한 디오게네스의 대답 그리고 루소와 볼테르 사이의 긴장인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사이의 긴장의 연장선상에 있다. 칸트는 난민을 포함한 이방인 갖는 환대의 권리를 말하지만, 그것은 ‘영주의 권리’가 아닌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문의 권리’이다(I. Kant 1992). 칸트는 ‘지구표면에 대한 공통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세계시민적 권리의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주권적 권력이라는 전제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칸트의 환대의 경우 이방인을 맞이하는 주체의 판단을 전제하는 것이며, 이방인은 여전히 객체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환대’는 분명 ‘관용’의 연장선상, 즉 주체의 관용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조건적’

인 것이다. 결국 데리다는 이념적 지향으로서 ‘무조건적’ 환대는 ‘타자중심적’이며, ‘초대에 의한 환대’가 아닌 ‘방문에 의한 환대’임을 강조한다.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환대는, 환대 그 자체는, 기대되지도 초대되지도 않는 모든 자에게, 절대적으로 낯선 방문자로서 도착한 모든 자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도착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G. Borradori 2004, 234). 이러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의 경우 환대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타자가 주체로서 전화되면서 공존해야 하는 문제, 공존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이방인을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또한 객체로서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상호 주체로서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¹³⁾ 결국은 윤리적 언어가 아닌 정치적 언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것은 ‘타자에 대한 무한한 존중’이 민주주의적 주체와 실천 그리고 틀과 결합해야 함을 의미한다(J. Rancière 2013).

결국 주류사회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수용 - 관용 혹은 환대 - 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이주자들이 자신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존 사회에서는 그들에 대해 어떠한 장치를 통해 그들이 공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논의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환대의 윤리를 넘어서 공존을 위한 권리들에 대한 사유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방인, 타자는 환대나 관용의 대상 즉 객체화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윤리적 공동체를 넘어서¹⁴⁾ 권리의 주체로서 또한 민주주의적 주체로서 다양한 행위자들을 고

13) 데리다는 무조건적 환대가 타자에 대한 실체적 태도라기보다는 조건적 환대의 제한성을 드러나게 하는 규제적 역할을 하며, 역으로 무조건적 환대는 조건적 환대로 전환되어야 현실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즉 무조건적 환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 향상되는 조건적 환대이어야 하며, 조건적 환대는 무조건적 환대에 의해 인도되고 고취될 때 환대로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문성훈 2011, 409). 그러한 의미에서 데리다의 경우 주체와 객체의 전도/전위를 통한 윤리적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데리다는 법/권리에 대한 거리두기, 즉 법이 갖는 폭력적 성격에 대한 우려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로만 풀어가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J. Derrida 2004).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데리다의 문제의식을 확장하기 위한 ‘권리의 정치’를 사유해 볼 수 있다.

14) 이 지점에서 그들이 사유하는 공동체 - 블랑쇼의 ‘말할 수 없는 공동체’ 혹은 장-뤽 낭시의 ‘무위의 공동체’ 등 - 는 맑스가 상상했던 공산주의와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맑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낮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비평을 하

려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데리다가 우려하는 것처럼 법이 갖는 폭력적 성격, 법의 내재적 속성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권리의 정치로서 인권의 정치를 제기하는 경우, 즉 보편적 무기로서 권리를 제기하는 경우, 그것은 법에 대한 권리의 선차성, 권력에 대한 권리의 우선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C. Lefort 2015; 홍태영 2016). 결국은 이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르포르의 지적처럼 권리의 내용은 선형적으로 주어지거나 자연권적 접근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체들의 권리가 요구되고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한 권리의 정치를 통해 권력이 구성되는 것이지 권력에 의해 권리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대비되어 아렌트가 말하는 “권리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결국 국민국가의 성원권의 문제이다. 국민국가 시대에 인간의 권리는 결국 국가권력의 인정을 받을 때 즉 성원권을 획득할 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권리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역시 결국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르포르, 발리바르 등이 제기하는 ‘인권의 정치’는 결국 권력에 우선하는 권리의 요구이자 인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통해 ‘사회적인 것’을 구성/형태짓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사유가 가능하다.

권리의 정치를 통해 세 번째 문제인 정치공동체의 문제로 넘어간다. 즉 권리의 정치를 통해 구성되는 정치적 공간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를 상상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정착하면서 동시에 이주하는 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그들의 주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공동체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국민국가 단위를 횡단하고 혹은 그것을 넘는 수준의 공동체 혹은 민족 하위 수준에서의 공동체 - trans/sub national - 의 가능성들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다양한 주체들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한 어떠한 장치와 노력이 필요한가?

는 사회’라고 묘사했듯이 그러할 수 있다. 그것은 최대강령의 문제이다. 먼 미래의 ‘도래할 민주주의’, ‘도래할 공동체’이다.

국민국가 시기의 전형적인 갈등 중의 하나는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갈등이었다. 또한 현대의 권리와 관련하여서도 세계시민주의와 공화주의의 갈등이 존재한다. 장-뤽 낭시나 블랑쇼(M. Blanchot)가 ‘무위의 공동체’ 등의 개념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공동체의 단일성이 가져올 수 있는 전체주의화에 대한 두려움이다(J.-L. Nancy 2010). 레비나스의 절대적 현대는 기존의 공동체가 어떠한 진입의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주장이다. 이들이 보기에 조건적 현대는 ‘동일화의 폭력’이며, 그것은 결국 전체주의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에 공화주의자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체에 대한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동체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혹은 공동선의 강조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구성원 혹은 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강조한다. 공화주의자의 입장에서 절대적 현대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기존 사회의 주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진입자에게 대한 판단을 행할 것이며, 그들의 진입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것이다. 공동체는 단순한 메트로 - 원하는 곳에서 타고 내릴 수 있는 - 가 아니다라는 프랑스 공화주의자의 주장은 그것을 말한다.

결국 최근의 이주의 정치경제학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제기되는 권리의 정치와 그것의 실현공간을 구상할 밖에 없다. 푸코가 거대한 권력의 망에 대항하는 저항의 지점이자 주체를 찾는 곳은 바로 “영원성의 형태인 인간이 아니라 특이성의 담지자이자 가능성으로 가득찬 삶”이었다는 점을 들뢰즈는 상기시켰다(G. Deleuze 1995, 139). 결국 삶의 실현되는 공간으로부터 권리의 정치가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정치의 출발점은 국민국가 시기의 국적이 아니라 이제 ‘거주에 기반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구화 속에서 세계의 대도시들은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집중지가 되면서 생산, 소비, 교환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글로벌 시티는 다중 언어, 다중 문화, 다중 국적이 교차하는 공간이며, 초국가적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글로벌 시티는 뉴욕, 시카고, 상파울루, 서울 등과 같이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경을 가로지르는 전략적 사이트 및 네트워크의 기능”을 말한다(S. Sassen 2001). 글로벌 시티는 민족주의가 영토성을 벗어나 초국민주의를 구성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초국민적 정치적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E. Balibar 2001, 255-256). ‘도시에 대한 권

리'(H. Lefebvre 1996; D. Harvey 2008; 강현수 2009)는 국민국가 시기의 국적에 기반한 시민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주에 기반한 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도시의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이며, 도시를 만들어가는 권리이다. 도시는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공간이자 그들의 공동체가 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즉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결국 이방인은 이방인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것의 문제의 해결의 주체로서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작동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과 결합된다. 권리의 주체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과 요구를 통해 주체화과정을 거치게 되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종의 원환이 구성된다. 이 세 가지 계기는 결국 현재의 국민국가의 위기, '민족적' 민주주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계기가 될 것이다.¹⁵⁾

V. 글을 맺으며

극우세력이 세련화된 동원방식을 취하고 신자유주의의 강세 속에서 국민국가

15) 물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작업은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된다. 리처드 세넷은 구조적 불평등과 새로운 노동형태가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관용을 넘어선 공동체적 연대, 사회적 협력, 존중, 보살핌, 참여 등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연대와는 다른 방식의 '협력'을 제안한다(R. Sennett 2004; 2013). 다소간 불명확해 보이지만 일종의 공동체주의적 방식의 협력이라 짐작할 수 있다. 카스텔 역시 '사회적 응집과 노동자 대의의 주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노동운동의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본다(M. Castells 2008). 그는 계급에 기반하지 않는 정체성운동이야말로 정보시대의 잠재적 주체들이라고 본다.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 사이에서 전개된 '분배냐 인정이냐'에 대한 토론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N. Fraser & A. Honneth 2014). 분배를 인정의 표현으로 보는 악셀 호네트의 입장에 대해 환원될 수 없는 독립적인 문제로 보는 낸시 프레이저의 입장이 대비된다. 낸시 프레이저는 불평등과 무시라는 두 가지 문제가 교차 시정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라는 방어막이 취약성을 보이면서 극우민족주의 세력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기존 사회적 국민국가, 즉 복지국가가 만들어준 보호막이 서서히 걷히면서 경쟁 속에 개인들만이 남아 있게 된 상황에서 민족주의는 그나마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주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보호막의 확장이 아니라 보호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도록 만드는 논리이다. 위험사회, 분노사회 등 현대 사회를 묘사하는 다양한 개념들은 나름 의미를 지닌 말들이다. 분명 현 시점은 극우적 폐쇄성과 배제의 논리가 잘 먹히는 상황이고 누군가에게 비난과 불만의 화살을 돌리도록 만드는 사회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자신에게 향하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다.

유럽적 근대(성)의 내용으로서 주권권력, 국민경제,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적인 것의 작동과 국민국가적 해결 등은 서서히 위기 혹은 해체를 경험한다. 국민경제의 틀은 이미 세계화된 경제에 편입되어 작동하며,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에 따른 다양한 거버넌스의 발생하고 있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은 세계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작동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것의 해결 방식은 ‘사회적인 것’의 해체를 통한 개인으로의 회귀 혹은 최근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의 주체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려 하고 있다. 근대적 해결방식이 아닌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합의된 결과를 낳거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신자유주의 시대, 지속적인 이주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적인 것’의 문제는 국민국가 시대와는 상이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국민국가의 위기와 해체는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통한 해결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해결책이 요구된다. 즉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방향에서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사회적인 것’의 문제 역시 국민적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과제는 국민국가로의 회귀 혹은 그것을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복원이라기 보다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흐름과 같이 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동학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민주주의

를 구성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국가 시기의 민주주의의 해체의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방식은 국민국가로의 복귀를 통하기 보다는 국민 국가라는 틀을 벗어나는 민주주의의 구성이며, 그것은 현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구축이다. 특히 민주주의적 주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 국민국가의 민주주의에서 국적에 기반한 시민 주체를 설정하였다면, 이제 이제는 거주에 기반한 시민권, 자유롭게 이동하는 시민을 주체로 설정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 사회』 32호.
- 고진, 가라타니. 2009. 『네이션과 미학』. 서울: 도서출판b.
- 김수행, 정병기, 홍태영. 2008.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2판. 서울: 서울대 출판부.
- 문성훈. 2011.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프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21호.
- 박성현. 2012. 『신자유주의와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서울: 백산서당.
- 사토 요시유키. 2014. 『신자유주의와 권력』. 김상운 역. 서울: 후마니타스.
- 서동진. 2009. 『자유와 의지 자기 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 _____. 2012. “포스트 사회과학: 사회적인 것이 과학, 그 이후?” 『민족문화연구』 57호.
- 안정옥. 2013a. “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불안/전의 일상화와 사회적인 것의 귀환?” 『아세아 연구』, 56권 1호.
- _____. 2013b. “장기 20세기로의 전환과 사회적인 것의 부상.” 『아세아 연구』 56권 3호.
- 오창룡, 이재승. 2016. “프랑스 국민전선의 라이스테(laïcité) 이념 수용.” 『유럽연구』 34권 1호.
- 이진경. 2011.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서울: 휴머니스트.
- 최진우. 2015. “유럽 다문화사회의 위기와 유럽통합.” 최진우 엮음. 『민족주의와 문화정치』. 서울: 한울.
- 홍태영. 2008. 『국민국가의 정치학』. 서울: 후마니타스.
- _____. 2011. 『정체성의 정치학』. 서울: 서강대출판부.
- _____. 2012. “프랑스 공화주의의 전환: 애국심에서 민족주의로.” 『사회과학연구』 20권 1호.
- _____. 2016. “민주주의와 인간권리의 정치: 클로드 르포르의 민주주의의 구성과 확장.” 『민족문화연구』 70호.
- _____. 2017. “국민국가의 민족주의에서 ‘민족’없는 민족주의로.” 『다문화사회연구』 10권 1호.
- Agamben, G. 저. 박진우 역. 2008.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 Balibar, E. 2001. *Nous, citoyens d'Europe? Les frontières, l'Etat, le peuple*. Paris: La découverte.
- Bauman, Z. 저. 이수영 역. 2010. 『새로운 빈곤』. 서울: 천지인.

- Boltanski, Luc et Chiapello, Eve, 1999. *Le nouvel esprit du capitalisme*. Paris: Gallimard.
- Borradori, G. 저. 손철성 외 역. 2004. 『테러시대의 철학 - 하버마스와 데리다의 대화』. 서울: 문학과 지성사.
- Brown, W. 저. 이승철 역. 2010. 『관용』. 서울: 갈무리.
- Castel, R. 1995. *La métamorphose de la question sociale*. Paris: Fayard.
- Castells, M. 저. 정병순 역. 2008. 『정체성 권력』. 서울: 한울.
- Colley, L. 1994.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 ~1837*.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Whose Nation? Class and National Consciousness in Britain 1750~1830." *Past & Present*. No. 113.
- Derrida, Jacques 저. 진태원 역. 2004. 『법의 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Deleuze, Giles 저. 권영숙 외 역. 1995. 『들뢰즈의 푸코』. 서울: 새길.
- Dirlik, Arif 저. 황동연 역. 2005. 『포스트모더니티의 역사들』. 서울: 창비.
- Evans. M. 1996. "Languages of racism within contemporary Europe." B, Jenkins and S. A. Sofos. ed., *Nation and identity in contemporary Europe*. London: Routledge.
- Foucault, M. 2004. *Naissance de la biopolitique*. Cours d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Paris: Gallimard-Seuil.
- Fraser, N. & Honneth, A. 저. 김원식 외 역. 2014. 『분배냐, 인정이나?』. 서울: 사월의 책.
- Godechot. J. 1971. "Nation, patrie, nationalisme et patriotism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Annales Historique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43 oct-déc.
- Greenfield, Liah. 2001. *The spirit of capitalism*. Cambridge: Harvard U.P.
- Guizot, François 저. 임승휘 역. 2014. 『유럽문명의 역사』. 서울: 아카넷.
- Harvey, D.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No. 53. Sept-Oct..
- Lefebvre, H. 1996. *Writings on cities*, selected, translated and introduced by E. Kofman and E. Lebas. Cambridge, Mass : Blackwell.
- Lefort, Claude 저. 홍태영 역. 2015.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 서울: 그린비.
- List. F. 1998. *Système nationale d'économie politique*, traduit par H. Richelot, préface d'E. Todd, Paris: Gallimard.
- MacNally, D. 저. 강수돌 외 역. 2011. 『글로벌 슬럼프』. 서울: 그린비.
- Marx, Karl 저. 김수행 역. 1989. 『자본론』. I. 서울: 비봉출판사.

- Michelet, Jules. 1974. *Le peuple*. Paris: GF-Flammarion.
- Nancy, Jean-Luc 저. 박준상 역. 2010. 『무위의 공동체』. 서울: 인간사랑.
- Polanyi, Karl 저. 박현수 역. 1991. 『거대한 변환』. 서울: 민음사.
- Rancière, Jacques 저. 최용미 역. 2013. “민주주의는 유효한가?” 『이두 데리다』. 서울: 인간사랑.
- Renan, Ernest. 1992. *Qu'est ce qu'une nation?* Paris: puf.
- Roy, O. 2007. “Préface.” J. Laurence, J. Vaisse. *Intégrer l'islam. La France et ses musulmans: enjeux et réussites*. Paris: Odile Jacob.
- Sassen, S. 2001. *The Global c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nnett, Richard 저. 유강은 역. 2004.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서울: 문예출판사.
- Sennett, Richard 저. 김병화 역. 2013. 『투게더』. 서울: 현암사.
- Smith, Anthony D. 저. 김인중 역. 2016. 『족류상징주의와 민족주의』. 서울: 아카넷.
- Standing, G. 저. 김태호 역. 2014. 『프레카리아트 - 새로운 위험한 계급』. 서울: 박종철출판사.
- Taylor. Charles 저. 이상길 역. 2010. 『근대의 사회적 상상』. 서울: 이음.
- Tilly, Charles 저. 이향순 역. 1994.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서울: 학문과 사상사.
- Wallerstein, I. 1995. “Response: Declining States, Declining Rights?.”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No. 47.

투고일: 2017.02.08.	심사일: 2017.02.27.	게재확정일: 2017.03.28.
------------------	------------------	--------------------

Crisis of national democracy and moments of new community

Hong, Tai Young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m, we can discover an ironic phenomenon which is the rising of extreme nationalism like triumph of Trump, American President and ascendancy of extreme right in Europe. This irony appears because of the necessity to control the large mobilization and migration of labour by neo-liberalism, which is new state device. Neo-liberalism and extreme right nationalism need each other. In Europe, extreme-right nationalism refuses the European Union and demands to strengthen nation-state and national identity. And it distinguishes the immigrant workers, in showing the exclusiveness about the strangers. These neo-liberalism and extreme right nationalism encroach the democratic results by the nation-state. The task of contemporary democracy is to discover moments of new community and new democracy which can overcome the limits of national democracy.

Key Words | neo-liberalism, extreme-right nationalism, migrant worker, distinction, new community, national democracy